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-86호

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(일원동 690-1)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06월 23일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(일원동 690-1번지)
4. 정비구역의 면적 : 10,440.4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권태정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(일원대우아파트 단지)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8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. 06. 15.
9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최고높이(m)	건축물의 주된 용도	층 수
8,558.3	26.22	249.90	33,025.2479	65M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지하2층 ~ 지상22층

10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공급구분	주택의 형태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
				60㎡이하	60~85㎡미만	85㎡이상
계		4	184	39	80	65
재건축소형	아파트	미정	11	11	-	-
분양	아파트	4	173	28	80	65

11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에 관한사항

종 류	규 모(㎡)	시 행 자	비 고
도로(중로 2-407)	395.10	일원대우아파트조합	
도로(중로 2-402)	830.20	일원대우아파트조합	
공원(근린공원)	656.80	일원대우아파트조합	

12. 의제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- 「주택법」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- 「건축법」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
13.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(☎02-3423-6062)에 비치 보관 끝.